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74호 2020. 12. 28.(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어려운 한자어 장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21호)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22호)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23호)
-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24호)
-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25호)

규 칙

-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285호)

고 시

-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예천군 고시 제2020-103호)
- 감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0-104호)

공 고

-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0-1556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21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2조(「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3조(「예천군 공유재산 임야관리 위탁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공유
재산 임야관리 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여)”를“(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여”를 “분배”로 한다.

제6조의 제목“(수익분여의 환가)”를“(수익분배의 환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분여”를 “분배”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분여율”을 “분배율”로 한다.

제4조(「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
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쌍태아”를 “쌍둥이”로 한다.

제5조(「예천군의회 포상 조례」의 개정) 예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를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로 한다.

제6조(「예천군 포상 조례」의 개정)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를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로 한다.

제7조(「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입방미터당”을 각각 “세제곱미터당”으로 한다.

제8조(「예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의 개정) 예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리”를 “총괄”로 한다.

제9조(「예천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폭원”을 “너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자주 사용하는 쉬운 한자어로 바꾸어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 어려운 한자어 정비(정비대상 조례 9건)

연번	조례명	정비대상 용어	순화 용어	비 고
1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미연에	미리	제1조
2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미연에	미리	제2조
3	예천군 공유재산 임야관리 위탁 조례	분여	분배	제3조
4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쌍태아	쌍둥이	제4조
5	예천군의회 포상 조례	앙양	드높이다	제5조
6	예천군 포상 조례	앙양	드높이다	제6조
7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입방미터	세제곱미터	제7조
8	예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통리하다	총괄하다	제8조
9	예천군 주차장 조례	폭원	너비	제9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22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86명”을 “73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75명”을 “722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0.8%이내	5%이내	25%이내	30%이내	<u>25%이내</u>	<u>13.7%이상</u>	0.5%이내

비 고 : 읍·면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13%이내	87%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예천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계	733	353	11	113	41	25	190
정무직 계	1	1	—	—	—	—	—
군수	1	1	—	—	—	—	—
일반직 계	691	344	11	84	37	25	190
4급	2	1	—	1	—	—	—
4급 내지 5급	3	3	—	—	—	—	—
5급, 5급 내지 연구관 또는 지도관	32	12	3	2	3	1	11
6급 이하	651	326	8	80	34	24	179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육교관)	1	—	—	1	—	—	—
전문경력관 다군(사진·영상촬영)	2	2	—	—	—	—	—
별정직 계	—	—	—	—	—	—	—
6급 상당 이하	—	—	—	—	—	—	—
연구직 계	8	5	—	—	3	—	—
연구사	8	5	—	—	3	—	—
지도직 계	33	3	—	29	1	—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30	3	—	26	1	—	—

◇개정이유

민선 7기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구현을 위한 인력 기반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686명 ⇨ 733명 / 증 47명(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722명 / 증 4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변동 없음)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 2)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현 행	0.8%이내	5%이내	25%이내	30%이내	24%이내	14.7%이상	0.5%이내
개정안	0.8%이내	5%이내	25%이내	30%이내	25%이내	13.7%이상	0.5%이내
증 감	-	-	-	-	+1%	-1%	

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별표 3)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비고
현 행	686	343	11	104	31	197	
개정안	733	353	11	113	41	215	
증 감	+47	+10	-	+9	+10	+18	

라.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별표 3)

구 분	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 행	646	1	2	3	30	158	190	150	109	3
개정안	692	1	2	3	32	165	198	171	117	3
증 감	+46	-	-	-	+2	+7	+8	+21	+8	-

마.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연구·지도직(별표 3)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40	-	7	3	30
개정안	41	-	8	3	30
증 감	+1	-	+1	-	-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23호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산림축산과”를 “산림녹지과, 축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축산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목(종전의 마목) 중 “축산위생”을 “산림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축산과장

가. 축산행정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축산환경 관리 및 친환경 축산에 관한 사항

다. 축산업 허가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라. 축산위생 및 동물방역에 관한 사항

마. 가축사양관리 기술 지도

제9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로 한다.

제12조 중 “곤충연구소에 곤충연구소장을 두며”를 “곤충연구소에 곤충연구소장을 두며, 맑은물사업소에 맑은물사업소장을 두고”로 한다.

제1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맑은물사업소장

가.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나. 상·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산림축산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

②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산림축산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예천군보건소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 일원
용문보건지소	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1209-7	용문면 일원
효자면·은풍면 통합보건지소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100-7	효자면 및 은풍면 일원
감천보건지소	예천군 감천면 포리2길 26	감천면 일원
보문보건지소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10	보문면 일원
호명보건지소	예천군 호명면 오천길 23	호명면 일원
유천보건지소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685	유천면 일원
용궁보건지소	예천군 용궁면 용개로 12	용궁면 일원
개포보건지소	예천군 개포면 용개로 1015	개포면 일원
지보보건지소	예천군 지보면 소화1길 20-7	지보면 일원
풍양보건지소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26-9	풍양면 일원
원류보건진료소	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874-4	두천,사부1·2,내지1·2,원류리
대제보건진료소	예천군 용문면 반서울로 376	제곡,대제,하학리
석묘보건진료소	예천군 효자면 석묘리길 4	백석,초항,고항,석묘,보곡리
부초보건진료소	예천군 은풍면 부용봉길 99-10	을곡,부초,시항,오류2리
천향보건진료소	예천군 감천면 석송로 416	천향1·2,관현1·2,진평1·2리
수계보건진료소	예천군 보문면 수양길 8	오신,우래1·2,수계1·2,작곡리
독양보건진료소	예천군 보문면 옥계천로 464	옥천,독양1·2,기곡1·2
송곡보건진료소	예천군 호명면 호명로 305	송곡,한어,백송,원곡,본포리
중평보건진료소	예천군 유천면 중평길 99	중평,죽안,화전,송전,마천,사곡리
덕계보건진료소	예천군 용궁면 덕계1길 71	덕계,송암1·2,월오2리
대은보건진료소	예천군 용궁면 대은길 18	대은1·2,향석1·2,무지리
경진보건진료소	예천군 개포면 용개로 1486-14	동송,경진,이사,금리
상월보건진료소	예천군 지보면 상월길 135-11	상월,수월1·2,마산,만화2리
지보보건진료소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길 183	지보1·2,도장,도화2리
우망보건진료소	예천군 풍양면 청곡길 40	우망1·2,청곡1·2리
청운보건진료소	예천군 풍양면 청운1리길 42	청운1·2·3,삼강,하풍리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1조 관련)

사업소명	위 치
체 육 사 업 소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
곤 충 연 구 소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045
맑은물사업소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

◇개정이유

민선 7기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구현을 위한 인력 기반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산림축산과를 산림녹지과와 축산과로 분리(제3조)
- 나. 맑은물사업소 설치에 따른 소관사무 정비(제12조, 제13조 및 별표 2)
- 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현행화(별표 1)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24호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31조부터 제4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

- 제3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직권으로 또는 제32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35조에 따른 예천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33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3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3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3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3조 앞에 “제8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1조를 제4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신청기준(제31조 ~ 제34조)
 - 지정의 절차, 신청기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
 -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35조 ~ 제42조)
 - 위원회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회의 운영 및 참석 수당에 관한 규정
 - 운영 세칙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25호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상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관련 행사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등록된 자 및 관련 행사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관련 행사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표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관련 행사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및 관련 행사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4.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예천군 관내로 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대구성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

가. 체험 예정일 5일 전까지 체험 예약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제10조에 따라 입장을 거부하는 경우

다.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라. 체험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고되어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군수가 반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체험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일부 반환

가. 체험 예정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예약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나. 체험 예정일 1일 전에 예약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20% 공제 후 반환

다. 체험 예정일 당일 예약 신청을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는 경우 : 납부 금액의 30% 공제 후 반환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 및 체험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 시설 사용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2.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일부 반환

가.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나.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20% 공제 후 반환

다.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는 경우 : 납부 금액의 30% 공제 후 반환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④ 금융기관 수수료 등 반환 시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은 예천군이 부담한다.
-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제8조 관련)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개 인	단 체 (20인 이상)	
목공 체험실	대(大)품 (점당)	전동톱, 우드버닝기 등 기계를 이용한 작업	3,000원	개인체험료의 30% 할인	체험프로그램 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 는 별도 부과
	중(中)품 (점당)	망치 등 간단한 공구를 이용한 작업	2,000원	"	
	소(小) 품 (점당)	목공풀 등을 이용한 단순 작업	1,000원	"	
목재놀이체험실		목재놀이도구를 사용한 놀이체험 공간	무 료		
목재전시실		목재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공간			

- 목공체험실 이용시간의 경우 기본 4시간으로 하되 해당 시간 초과 시 추가 금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체험장 단체 이용객 중 인솔자는 무료입장으로 한다.
- 군민, 경로우대자, 장애인, 다자녀가정의 세대구성원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또는 카드 지참 시 단체할인 금액을 적용한다.
-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체험료 면제 및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체험 재료비는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우려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허한다.

◇개정이유

- 공공시설인 목재문화체험장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의 이용료를 면제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고, 생계 및 의료 수급 대상자와 다자녀가정 세대구성원의 이용료를 감면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납부한 체험료 및 사용료의 개별 반환 사유와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용객의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향상을 도모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체험료 및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대상자 변경 및 추가(제9조)

-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면제 대상자 추가
- 감면 대상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다자녀가정의 세대구성원 추가

나. 체험료 및 사용료의 반환 사유와 반환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제9조의2)

- 체험료 반환 사유
 - (전액 반환) 체험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 취소, 제10조에 따라 입장 거부 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
 - (일부 반환) 체험예정일 2~4일 전까지 취소 시 10% 공제, 체험 예정일 1일 전 취소 시 20% 공제, 당일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을 시 30% 공제 후 반환
- 사용료 반환 사유
 -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 취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일부 반환) 사용예정일 2~4일 전까지 취소 시 10% 공제, 사용 예정일 1일 전 취소 시 20% 공제, 당일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을 시 30% 공제 후 반환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2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285호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목재문화체험장의 이용객이 납부한 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체험료 반환과 관련된 기존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에 대한 조례 신설로 인한 삭제(제7조 삭제)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2021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 12. 28.

예 천 군 수

☐ 2021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별도 비치(예천군청 재무과)

1.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2.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3. 경과 연수별 잔가율
4. 가감산 특례
5. 증 · 개축 건물축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7.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 요령

☐ 2021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별도 비치(예천군청 재무과)

☐ 열람장소 : 예천군청 재무과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감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감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에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고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면 중심지의 거점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업의 내용

- 위 치 : 예천군 감천면 포리 일원
- 주요 사업내용
 - 기초 생 활 기 반 : 감천행복문화센터, 감천복지나눔마당
 - 지 역 경 관 개 선 : 가로경관정비, 감천CPTED 안전지대
 - 지 역 역 량 강 화 : 교육·지역활성화 등
- 사업대상지 변경 내용
 - 변경전
 - 감천행복문화센터 : 감천면 포리 418-2(660m²)
 - 감천복지나눔마당 : 감천면 포리 434-2(2,622m²)
 - 변경후
 - 감천행복문화센터 : 감천면 포리 388-1외 3필지(660m²)
 - 감천복지나눔마당 : 감천면 포리 388-1외 3필지(1,659m²)

4. 사업효과

- 농어촌 중심지 기능의 강화를 배후 농촌지역과 긴밀히 연계시킴으로써 농촌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5. 사업비 : 4,000백만원 (국비 2,800 군비 1,200)

6.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4개년)

7.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일괄(위)수탁)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의 명세서 : 붙임참조

9. 기타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설교통과(054-650-65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조서

연 번	행정 구역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1	감천면	포리	388-1	대	1,159	1,159	권장혁	대전시 유성구 어은로57 한빛아파트 105-402호
							권진혁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국사봉로 741
							권순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1길 34 구산 APT 504호
2	감천면	포리	388-2	대	836	836	권순욱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 29길7(양재동,5층)
							권순보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9 송파한양 1차 APT 5동 701호
3	감천면	포리	388-11	대	99	99	박찬철	예천군 감천면 포리2길4-5
4	감천면	포리	389-5	대	225	225	박찬철	예천군 감천면 포리2길4-5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예천군 공인조례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폐기 및 신조 공인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조 및 폐기 사유 :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및 폐지
2. 신조 및 폐기 개시일 : 2021년 1월 1일
3. 신조 및 폐기 공인내역 : 붙임과 같음

2020년 12월 28일

예 천 군 수

신조 공인 내역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신조	예천군맑은물 사업소장인	훈민정음체 2.1cm×2.1cm		
신조	예천군맑은물 사업소재무관인	훈민정음체 2.0cm×2.0cm		
신조	예천군맑은물 사업소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0cm×2.0cm		
신조	예천군맑은물 사업소물품관리 관인	훈민정음체 2.0cm×2.0cm		
신조	예천군맑은물 사업소지출원인	훈민정음체 2.0cm×2.0cm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신조	예천군맑은물 사업소수입금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신조	예천군맑은물 사업소일상경비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신조	예천군맑은물 사업소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신조	예천군맑은물 사업소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1.8cm		
신조	예천군맑은물 사업소계인	전서체 1.3cm×3.0cm		
신조	예천군산림녹지과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1.8cm		
신조	예천군축산과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1.8cm		

폐기 공인 내역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	-------	---------	-----	-----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폐기	예천군산림축산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전서체 1.8cm×1.8cm		

예천군 공고 제 2020 - 1556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예천군 공인조례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폐기 및 신조 공인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조 및 폐기 사유 :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및 폐지
2. 신조 및 폐기 개시일 : 2021년 1월 1일
3. 신조 및 폐기 공인내역 : 붙임과 같음

2020년 12월 28일

예 천 군 수

신조 공인 내역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신조	예천군맑은물 사업소장인	훈민정음체 2.1cm×2.1cm		
신조	예천군맑은물 사업소재무관인	훈민정음체 2.0cm×2.0cm		
신조	예천군맑은물 사업소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0cm×2.0cm		
신조	예천군맑은물 사업소물품관리관인	훈민정음체 2.0cm×2.0cm		
신조	예천군맑은물 사업소지출원인	훈민정음체 2.0cm×2.0cm		
신조	예천군맑은물 사업소수입금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신조	예천군맑은물 사업소일상경비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신조	예천군맑은물 사업소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신조	예천군맑은물 사업소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1.8cm		
신조	예천군맑은물 사업소계인	전서체 1.3cm×3.0cm		
신조	예천군산림녹지과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1.8cm		
신조	예천군축산과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1.8cm		

폐기 공인 내역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폐기	예천군산림축산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전서체 1.8cm×1.8cm		

